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·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교육연구사 1명)을 증원하고,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·복직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28. ~ 2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2조(한시정원) ①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.

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·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.

별표 1 중 총계 “683”을 “684”로 하고, 특정직 계 “94”를 “95”로 하며, 장관·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“92”를 “93”으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42조 관련)

1. 제4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7년 2월 26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5급 이하	1

2. 제4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8년 2월 29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5급 이하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2조(한시정원) ① ~ ⑤ 삭제</u> <u>⑥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.</u>	<u>제42조(한시정원) ①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.</u> <u>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·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.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교육부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83</u>	<u>684</u>	+1
·	·	·	
·	·	·	
특정직 계	<u>94</u>	<u>95</u>	+1
·	·	·	
장학관 · 교육연구관 또는 4			
급 일반직 이하	<u>92</u>	<u>93</u>	+1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0